

별내그린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목적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1)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2)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3)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2. 계약기간

1)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. 단,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으로 한다.

- ①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-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한다.
- ③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.

<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.>

- 2)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- 3)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.

구 분		금액(원/%)	내 역
장기요양 보험급여 항목	공단지원금	총액의 80%	서비스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%중80%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. 노인장기요양법 40조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, 경감대상자는 60% ,40% 경감될 수 있음
	개인부담금	총액의 20%	
비급여 항목	식사재료비	4,000원	4,000원 * 3식 = 12.000원
	간식비	1,000원	1,000원 * 1회 = 1.000원

3. 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

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*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1)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(단, 병·의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2)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3)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- 4)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
- 5)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
- 6) 기타 “을”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

★ 수급자의 의무

- 1)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2)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3)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4)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5)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- 6)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★ 보호자(신원 인수인)의 의무

- 1)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- 2)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- 3)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5)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

4. 수급자의 권리

- 1)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- 2)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- 3) 모든 수급자는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4)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5)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6)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- 7)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
5. 보호자(신원 인수인)의 권리

- 1)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2)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3)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
4)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6. 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)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2)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3)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4)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5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6)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.
- 7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7. 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

- 1) 시설의 장은 매년 보건복지부(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)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,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2)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3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-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.

- 4)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5)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
- 6)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한다.
-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.
-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